K-Beauty & Cosmetic Show 2016 서구 기업 참가신청 계약서

K-Beauty & Cosmetic Show 2016 사무국 | Tel. 02-6000-6693/6696 | Fax. 02-2051-3326 | beauticoexpo@naver.com

1. 신청자

회사명 (사업자등록증기준)	국문)		
	영문)		
주 소	(우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부서 및 지위	
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	
홈페이지			
전시품(브랜드명)			
전시품목	*세부 기입		

2. 전자세금계산서 수령자 정보

수령자		부서 및 직위	
전 화		휴대폰	
이메일			

* 상기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신청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해당항목 체크 (*최대 2개)
일반 부스(3m*3m)	1,650,000원/부스	1,980,000원/부스	
서구 기업 할인	-220,000원/부스		*서구 기업 지원
서구 적용 부스단가 ①	**1,430,000원**	**1,760,000원**	*실제 업체 부담금 -100만원(인천시지원) 전체 참가비 입금 완료 후 환급예정
신청내역 ②	( )개 부스	( )개 부스	
합 계 (①X②)			원

* 위 참가비는 VAT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인천시 지원비 **100만원**은 전체 참가비 입금 완료 후 행사종료 시 기업에게 개별 환급처리 예정입니다.

지정은행 _ **국민은행** 계좌번호 _ **529401-01-180854** 예금주_**(주)엑스포럼**
* 참가신청 계약서 제출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K-Beauty & Cosmetic Show 2016의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수락하고, 참가비의 50%인 _____원 (VAT포함)을 계약금으로 납부합니다.

2016 년 월 일
계약 담당자 (서명)
대 표 이 사 (인)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은 전시자(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합니다.

여운택/서구|경제환경국|기업지원과/2016-07-25 15:46:48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1.「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2.「전시회」라 함은 '2016 코리아 뷰티 앤 코스메틱 쇼' 또는 'K-Beauty & Cosmetic Show 2016' 을 말한다.
3.「주최자」라 함은 '인천관광공사'와 '주식회사 엑스포럼'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순서 및 참가비 납입 순서, 전시품 성격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6.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의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은 2016년 8월 12일(금)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 조기신청 업체는 참가비 잔액을 2016년 7월 8일(목)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6년 7월 7일 까지 : 취소면적/신청면적×참가비(조립식부스비 포함)×50%
- 2016년 7월 9일 부터 2016년 8월 12일 까지 : 취소면적/신청면적×참가비(조립식부스비 포함)×80%
- 2016년 8월 13일 이후 : 취소면적/신청면적×참가비(조립식부스비 포함)×100%

제7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송도 컨벤시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016 년 월 일
계약 담당자 (서명)
대 표 이 사 (인)

어은택/서구|경제환경국|기업지원과/2016-07-25 15:46:48